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

## 청약 요건 확인

- ※ 본 안내문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청약안내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,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우선합니다.
- ※ 관련 법령 개정 및 편집과정의 오류 등 상이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신청자격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)
- ※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)
- 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.
- ※ **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.**
- 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
- '소형·저가주택'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.
- ※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(은행창구 접수 불가)하용. (방문 접수시간 : 10:00~14:00)

## 당첨자 선정방법

-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구미시) 거주자가 우선함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
-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-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 가점 산정 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 서류
① 무주택 기간	32	만 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민등록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</li> <li>■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</li> <li>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</li> <li>※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</li> </ul>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-	-	

- ※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유의 사항
-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산정함 (출생신고일로 부터, 만 19세 이상이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됨)
-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등재일로 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
- 무주택 기간 산정시 무주택 인정은 신청자(본인) 포함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까지 무주택이어야 함

② 부양 가족수	35	0명	5	4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민등록표등·초본</li> <li>■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■ 만 18세 이상(혼인적령 18세)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</li> <li>- 만 18세 이상 ~ 만 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- 만 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</li> </ul>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-	-	

- ※ 부양가족수 산정시 유의사항
-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미 포함임 (본인 포함해서 부양가족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빈번함)
-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
  - 본인(청약자)이 세대주이어야만 하고,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함
  -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
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: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함
  - 결혼한 자녀 및 손자녀, 미혼의 손자녀, 이혼한 자녀 및 손자녀는 부양가족수 산정 불가 (부모 모두 사망한 손자녀는 산정 가능)

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 됨)</li> </ul>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-	-	

계	84	공급신청자 청약가점점수 = ① + ② + ③				
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